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6761
----------	------

제출연월일 : 2023. 9.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23.7.10. 시행)에서 위임된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8조)
- 다.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직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라.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마.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바. 다른 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붙임)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8. 21. ~ 9. 11.(21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1건 제출, 결과요약서 붙임

2)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3)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

4) 갑질영향심사 : 개선의견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1건) 미반영

가) 제2조(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제1항, 제8조(분과위원회)제2항의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로 구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성별로 균형있는 참여를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성별을 고려하여” 추가)

⇒ 제정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고,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도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에 관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어 원안대로 유지함

6)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붙임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 ①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를 총괄하는 대구광역시 소속 실·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지방시대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2. 대구광역시 구청장·군수 및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3.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5.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 심의 수행 성과 및 회의 참석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은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분과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 ⑤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분과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분과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조사·연구) 시장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적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직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시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지역 특색에 맞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의 발굴 및 공론화를 위해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포상) 시장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한 개인·법인·기관·단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대구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
2.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제67조(시·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관할 시·도의 지방시대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을 둔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시·도 지방시대지원단 및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 제18조(시·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지역별 협의회 및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시·도 지방시대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지역별 협의회 및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시·도 지역혁신협의회가 심의한 사항은 제67조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 ③ ~ ④ 생략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65조(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지방시대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2.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3.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해당 시·도 지방의회 의원
 5. 해당 시·도 공무원
 6.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 ③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시·도 지방시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시·도 지방시대위원장은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⑥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시·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 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할 시·도 지역 산업·기업의 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관할 시·도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관할 시·도에서 법 제14조에 따라 추진하는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할 시·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
 6. 관할 기회발전특구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과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도 지방시대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⑧ 시·도지사는 제7항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이하 “시·도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규정)의 제1호*에 해당함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규정을 마련한 것임

나. 통합 전 법률에 근거해 각각 운영하던 2개 위원회 기능이 이 조례안에 근거해 신설되는 위원회로 통합되는 것이며, 추가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미첨부 1호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 기획조정실 광역협력담당관 박 윤 희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 : 이○○	의견 제출일 : 2023. 8. 25.
제안 의견	<p>[기존] 제10조(조사·연구) 시장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적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전문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p> <p>[수정안] 제10조(조사·연구) ① 시장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적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직원을 둘 수 있으며, <u>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u> ②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u>제1항의 전문기관 또는</u>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p> <p>[사유] (근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6조(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의 구성·운영) (사유) 상기 근거 규정에 의거하여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을 구성하고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해야 하나 현재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지방시대지원단 구성 대신 전문직원으로 대신하고자 하나 업무부담이 크고 상호연계성이 우려되므로 중앙지원조직과의 업무 연계가 가능하고 기획·평가·NW 등의 전문역량을 보유한 전문기관을 별도 지정한다면 지방시대위원회의 업무 지원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p>	
반영 결과	<p>○ 미반영 - 본 조례안에는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해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제안한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시행령을 근거로 추진할 수 있으므로 조례에 중복하지 않기로 함.</p>	